#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13

발의연월일: 2020. 6. 16.

발 의 자: 홍문표·권은희·박성중

박덕흠 • 이명수 • 엄태영

윤재갑 · 정운천 · 조경태

김희곤 의원(10인)

## 제안이유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국내 확산에 따라 민간 경제활동이 크게 감소하여 학교급식 등을 통한 농축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외국인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영농활동에 지장을 받는 등 농업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농업부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및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함.

이에 자경농민 경작목적 농지·농업시설의 취득세 감면, 농업법인의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조합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 영농자금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등 2020년말로 도래하는 농업부문 지방세 감면 관련 일몰기한을 각각 6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시설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함(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 나.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및 농업용수 공급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함(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 다.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등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 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6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 라.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75% 감면,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 면허세 면제 및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50%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6년 연장함(안 제11조제 1항, 제2항, 제4항).
- 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구매·판매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25% 감면, 농업협동조합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

20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6년 연장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3항).

- 바. 농수산물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제도의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6년 연장함(안 제15조제1항).
- 사.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 0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6년 연장함(안 제167조).

#### 법률 제 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6년 1 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 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7조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혂 했 개 정 안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 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 한 감면) ① -----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 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농 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1 제10조에 따른 후계 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 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 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 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 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 ----- 2026년 12월 31 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자경농민이 다음 각 호의 (2)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해당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1. ~ 3. (생략)
- ③ ④ (생 략)

제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지 ①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 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 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u>2020년</u>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②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u>2020년 12월 31</u> 일까지 면제한다.
-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저 관련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 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 어업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

<u>2026년 12월 31일</u>
<b>.</b>
1. ~ 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①
<b></b>
<u>2026년</u>
12월 31일
②
200C1
<u>2026년 12월 31</u>
일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등) ①

법인(營漁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담보물 등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중앙회, 농협은행및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영농자금・영어자금・영림자금(營林資金)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 5. (생략)

## ② (생 략)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중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농업법인의경우에는 4년 이내)에 취득하

<u>2026년 12월 31일</u>
1. ~ 5. (현행과 같음)
<ol> <li>~ 5. (현행과 같음)</li> <li>② (현행과 같음)</li> </ol>
② (현행과 같음)

는 농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1. ~ 2. (생략)
- ②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 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 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 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 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 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 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 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③ (생략)
- ④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 저 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 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 회가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 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2026년 12월 31일
1. ~ 2. (현행과 같음)
②
<u>202</u>
6년 12월 31일
③ (현행과 같음)
<b>4</b>
<u>2026년 1</u>
<u> 2월 31일</u>
∥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
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 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률」 제70조 제1항에 따른 유 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 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 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 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 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 감한다.

- 1. ~ 3. (생략)
- ② (생략)
- 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 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 촌계를 포함한다), 「산림조합 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을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 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 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 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3
3

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u>2</u>020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 ④·⑤ (생략)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저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농수산식 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제70조 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 합직판장 등의 농수산물 유통 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 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부 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 도매인 및 그 밖의 소매인이 해당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 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u>2</u>
026년 12월 31일
④·⑤ (현행과 같음)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 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 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026년 12월 31일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 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 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조세 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특례제한법 | 제72조 제1항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하여는 202 --- 202 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6년 12월31일 -----사업연도까지 「지방세법」제1 03조의20에서 규정하는 법인지 방소득세의 표준세율에도 불구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2 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 로 한다.